

動力資源部告示(第84-22號)

가스安全管理基金 組成을 위한 수입금의 징수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한 告示

液化石油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安全管理基金 組成을 위한 收入金의 징수 비율, 징수방법 및 가스안전관리기금의 보조·용자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3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4년 7월 14일

動力資源部長官

1. 收入金의 징수대상자

법 제38조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安全管理基金(이하 「기금」이라 한다) 組成을 위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수입업자
- 나. 石油精製業者로서 液化石油가스를 생산, 판매하는 자
- 다. 석유화학공업 사업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생산, 판매하는 자

2. 수입금의 징수비율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收入金의 징수대상자가 가스안전관리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국내에서 판매한 液化石油가스 1kg당 4.5원으로 한다.

3. 수입금의 징수 대상물량

- 가. 수입금징수대상 물량은 收入金징수 대상자가 판매하는 물량(韓國石油開發公社의 전산자료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른 징수대상자로부터 구매하여 판매한 물량과 정부비축용으로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대상물량으로 한다.
- 나. 다른 징수대상자로부터 구매한 當月の 물량이 當월에 판매한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른 징수대상자로부터 구매한 물량이 전량 판매될 때까지 익월 이후의 판매물량에서 계속 우

선 공제하여 산출한다.

4. 收入金의 납부절차

- 가. 收入金의 납부의무자는 매월 液化石油가스 판매물량에 대한 수입금(징수대상물량에 1kg당 4.5원을 곱한 금액)을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中小企業銀行의 가스안전관리기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나. 收入金의 납부의무자가 수입금납부 기한내에 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수입금에, 납부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 韓國가스安全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는 수입금의 납부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입금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告示에서 정한 기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基金의 용도

- 법 제39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에 사용한다.
- 가. 公社가 수행하는 가스안전기술의 개발·조사·연구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검사·교육·홍보사업비와 이외 부대경비보조
- 나. LPG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소요 용기 확보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6. 基金의 관리

- 가. 基金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가 관리 및 운용한다.
- 나. 公社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사용에 관한 관리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다. 公社는 韓國石油開發公社의 전산자료와 수입금의 징수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매월 수입금의 납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라. 수입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사항을 익월말까지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첨 서식에 의한 液化石油가스 판매실적 및 基金납부내역

2) 세급계산서상의 液化石油가스 판매물량 (석유화학공업 사업자에 한한다)

7. 基金의 용자

법 제39조 및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용자하는 容器 구입대금의 용자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용자대상

基金의 용자대상자는 1984년 4월 15일 현재 용기충전업 허가를 받고 사업을 이미 개시하고 있는 기존사업자에 한한다.

나. 용자조건

基金의 용자금액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은행금융기관의 대출금리(年 10%)를 적용한다.

다. 용자범위

연도별 용자한도액은 基金의 운용계획에 따라 정하며, 용기 구입대금의 대출기간은 1984년 1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존 개인소유 容器의 구입을 위한 용자금액은 구입대금의 100%, 기존사용처에 1개 추가 설치하는 용기의 구입을 위한 용자금액은 구입대금의 50% 범위 이내로 한다.

라. 용자절차

- 1) 容器 구입대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 용기구입소요량에 대한 시·도지사의 확인을 거쳐 韓國石油·가스유통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 용자신청, 協會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에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는다.
- 2) 協會는 용자대상자로부터 용자신청을 받아 연간 용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3) 協會는 추천에 앞서 용자신청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용자추천결과를 매월 公社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融資金의 목적의 사용에 대한 조치

中小企業銀行은 容器구입대금을 용자받은 자가 그 용자금액을 용기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協會의 요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용자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告示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첨]

液化石油가스 판매실적 및 基金납부내역

회 사 명		납부대상년월		기금납부금액	
基金 납부 은행		기금납부금액		납부 일자	
		당 월 말 고		당 월 말 고	
需 給 實 積(kg) (전산자료 기준)	前 月 말 고	當 月		기금납부 대상물량	당 월 말 고
		생산·수입·회사간 구매물량	판매물량		
수 급 세 부 내 용	自 社 生 産 分				
	輸 入 分				
	油 公				
	湖 油				
	京 仁				
	雙 龍				
	橫 東				
	正友에너지				
	湖南에틸렌				
	비 축물량				
기 타					
小 計					
비 고					

動力資源部告示(第84-23號)

熱供給사업의 熱供給容量산출방법

에너지利用合理化法 제40조 제2항 및 同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熱供給 사업의 열공급용량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告示한다.

1984. 7. 30

動力資源部長官

1. 증기보일러 또는 열교환기(증기발생용에 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Q = 539 \times We - Q'$$

• Q는 열공급용량(kcal/h)

• We는 보일러의 정격용량을 KSB 6205 (육용보일러의 열정산방식)에서 정하는 매시환산증발량으로 환산한 량(kg/h)

• Q'는 열병합발전용 보일러의 경우로 발전기 정격 출력시 발전에 소요되는 열량(kcal/h)

2. 온수보일러, 열펌프 또는 열교환기(증기 발생용을 제외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 $Q = (t_2 - t_1) \times V$

• Q는 열공급용량(kcal/h)

• t₂는 보일러, 열펌프 또는 열교환기의 출구에 있어서 가열된 물의 온도의 정격치(°C)

• t₁은 보일러, 열펌프 또는 열교환기의 입구에 있어서 가열되는 물의 온도의 정격치(°C)

• V는 가열된 물의 정격송출량(kg/h)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動力資源部告示(第84-24號)

石油精製業者에 대한 備蓄用 石油구입 자금의 용자요령

石油事業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6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精製業者의 비축용 石油구입 자금의 용자조건 등 용자요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4년 8월 1일
動力資源部長官

1. 融資 취급기관 및 용자대상자

가. 용자취급기관: 韓國石油開發公社(이하 「公社」라 한다)

나. 용자대상자: 精油5社(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용자금의 用途

令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 石油의 구입자금

3. 石油精製業者의 비축의무량과 용자금액

가. 비축의무량: 石油事業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원 통보한 비축의무량

나. 용자금액: 「가」호의 정부 지원에 의한 備蓄義務量의 구입에 필요한 자

금의 金額

(정부지원비축의무량·CIF) 基準額)

4. 용자재원: 석유비축기금

5. 融資條件 및 용자절차

가. 용자조건

(1) 이자율: 무이자

(2) 용자에 대한 담보: 신용(담보 없음 징구)

(3) 용자금의 상환: 3년거치 5년분할 상환단, 석유수급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감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4) 용자대상자의 의무: 제 3 항 가호의 비축의무 이행

나. 용자절차

(1) 용자약정서 체결: 公社는 용자대상자와 이 고시가 정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용자 약정서 체결

(2) 용자 신청기간: 비축용 原油의 선적완료후

(3) 용자금의 지급시기: 비축용 原油의 통관일

6. 備蓄義務 불이행시의 조치 및 제재

정부지원비축의무 미달물량에 대하여는 징수유예된 石油事業基金 및 용자금액에 대한 위약금으로 연체이자를 징수함. 다만,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調整命令(84. 8. 1)규제 특례의 경우에는 동 규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비축의무 불이행의 기준 및 미달물량 산출

동력자원부장관의 精油社 비축의무 재고량 유지 調整命令(84. 8. 1) 내용에 따라 산출된 정부지원비축의무 不足物量을 말함.

나. 징수시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징수금액을 산출하고, 익월 10일 이내에 징수함.

다. 징수금액의 算出公式

(1) 징수유예된 石油事業基金

매월말 기준 정부지원비축의무 부족량×미달시점의 石油事業基金 징수액

(2) 용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매월말 기준 정부지원비축의무 부족물량×배럴當 용자단가× $\frac{\text{해당월일수}}{365}$ ×은행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

7. 事後管理 등

가. 融資金 집행결과 보고 : 公社는 이 告示에 의한 융자금 집행결과를 동력자원부에 보고
 나. 일일재고상황 기록보존 및 제출 : 석유정제업자는 일일 재고상황을 기록 보존하고 매월 5일까지 전월의 재고 현황을 公社에 제출
 다. 비축의무량의 확인 및 조치 등 : 公社는 석유정제업자가 제출하는 일일재고 상황보고와 石油協會 일보(필요시 현지확인) 등에 의해 이 告示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의 비축의무 이행여부를 매월 확인하고, 석유정제업자가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제 6 항의 조치 및 제재를 취하며, 그 결과를

동력자원부에 보고
 라. 告示의 시행에 관한 사항위임 : 이 告示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公社가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시행
 부 칙
 (시행일) 이 告示는 1984. 8. 6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4년 8월분은 8월 6일에서 8월 31까지 계산한다.
 (경과조치) 原油 1377-5099호(84. 6. 18)에 의거 배분된 1984년 정부지원비축물량(3,000천배럴)에 대하여는 이 告示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이 告示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용자 조치한다.*

□ 石油市場動向 □

유럽 原油先物市場 폐쇄 現物油價 내리자 去來 크게줄어

英國의 원유선물시장이 문을 닫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IEP)가 83년말 개설한 유럽선물시장이 설치 6개월만에 폐쇄되었다. 그 이유는 석유회사나 중개업자(트레이더)들이 참가하지 않은데다 매매油種인 경질원유의 스파트가격이 계속하락, 거래가 거의 없어 문을 닫게된 때문이다.

석유정제업자나 중개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뉴욕·시카고등 美國 2大원유선물시장이 순조롭게 신장, 美國산원유나 북해·아프리카産 원유가격의 선행지표가 되고 있는데 반해 유럽선물시장의 폐쇄는 매매조건에 따른 문제도 내포하고 있었다.

원유선물시장을 보면 런던·로테르담의 스파트시장에서는 거래기간이 최대 1~2개월의 거래인데 대해 先物시장은 2개월이상 9개월까지의 매매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폐쇄된 런던의 국제 석유거래소는 3년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등유·경유를 중심으로 석유제품의 선물거래를 해왔다. 그런데 작년 3월에 미국에서 NYMEX(뉴욕상품거래소) CBOT(시카고

상품거래소) 등 2개소에 선물시장이 개설되어 지금까지 OPEC(석유수출국기구)나 메이저의 독점 상태였던 원유가격의 형성에 강력한 제 3 세력이 되었다. 이에 따라 美國에 이어 英國도 작년 12월 국제원유거래소를 서둘러 설치했다.

이에 따라 英美 양국에서 원유거래가 늘면 타국 석유회사나 대형상사, 중개업자, 정제업자들이 참여, 세계적인 규모의 원유선물시장을 탄생시킬 것으로 전망되었었다.

그러나 미국 2개소의 거래소가 미국산 원유외에 북해·아프리카산 원유 나아가 중남미산 원유까지 취급, 월간 거래량이 4 백만배럴에서 1천만배럴까지, 많을 때는 2천만배럴까지 늘어났으나 런던에서는 거래가 많은 달도 2만배럴, 통상은 5천~1만배럴 정도로 극히 부진했다.

이것은 영국시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BP 쉘 엑슨의 3대 메이저가 선물시장에 처음부터 참가하지 않은데다 유럽의 중개업자가 원유의 공급과잉에 따라 선물거래에 소극적이고 스파트시장에서 원유를 직접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